

---

#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

- 처분요구 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교통연구원
- 피감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감사기간
  - 실질감사 : 2013.4.15 ~ 4.23
  - 서면분석 : 2013.4.24 ~ 6.14



**국무조정실**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문 책 요 구

제 목 직책수행경비로의 예산집행지침 개정 및 경력과다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징 계 대상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처분요구종류 문 책

### 징 계 사유

위 사람은 2012.1.17부터 2013.7월 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행정실장으로서 행정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10.2 예산집행지침 개정 업무를 처리하였다.

#### 가. 직책수행경비로의 예산집행 지침 개정 부적정

연구회 「정관」에서는 이사장에게 회의수당, 경비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는 기밀비(판공비), 교제비 등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사학연금 준용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연구회는 내부지침인 「예산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05년부터 '11년까지 비상근 이사장에게 직책급, 능률성과급 및 정액판공비<sup>1)</sup>를 지급하였는데, '12.3.13 감사원이 이사장의 직책급, 정액판공비는 근거없는 보수성 경비라고 지적하고,

1) 정액판공비(4,500,000원/월), 직책급(2,000,000/월), 능률성과급(1,600,000원/년)

국무총리실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자 연구회는 '12.5.15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비상근인 이사장에게 출근 일수에 따라 회의수당 250,000원(1일)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사장이 '12.9.28. 오후 회의수당을 직책수행경비로 변경하도록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라고 구두로 지시하자, 위 사람은 감사원이 지적한 직책급과 개정하려는 직책수행경비는 성격이 유사하여 감사원 지적 및 국무총리실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국무총리실의 보고는 필요하다고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유로 행정실 직원에게 이사장의 요청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타직원의 직책수행경비는 이미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었고, 경비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의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다툼 없는 사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장의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 지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그런데 연구회 「복무규정」 제 2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정관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있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에서도 상급자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는 따르지 않게 되어있다.

하지만 위 사람은 이사장의 지침 개정이 정관 및 감사원 지적에 어긋날 수 있으며, 상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침을 개정하려고 한 정황이 상당함에도 이사장의 지시에 대해 “총리실에 보고는 해야하고, 소득세는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로 즉흥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성실하게 법령과 정관을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근로소득세를 미신고하라는 지시는 소득세법의 세금 납부의무를 위반하

는 명백한 법 위반의 상황임에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였다.

그 결과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정관」과 “직책급은 보수성 경비로서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맞지 않는 직책수행경비가 '12.10.~'13.3월까지 지급되었으며, 근로소득세를 연구회가 미신고함에 따라 이사장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01,380원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사학연금도 계속 수령할 수 있었다.

#### 나. 정규직 채용경력 과다 산정 부적정

경력산정 기준표에서 ‘갑경력’ 또는 ‘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공부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11.2.1.~ ‘12.12.23. 기간 중 채용한 신규직원에 대하여 민간기업에서의 근무경력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호봉을 산정하였다.

[표 1] 신규직원 경력 인정현황

채용일	성명	인정된 민간경력(기간, 환산율)	채용당시 호봉	비고
2011. 2.16	★★★	· (주)업코리아 기자(9개월, 100%)	8호봉	
2011. 2.16	○○○	· (주)비앤비커뮤니케이션즈 사원(6개월, 100%) · 샤니 사원(8개월, 100%)	6호봉	퇴사
2011. 2.16	●●●	· 한국해비타트서울 간사(1년6개월, 100%)	6호봉	
2011.12.29	◎◎◎	· 한솔홈데코 사원(1년, 100%)	5호봉	
2012. 4. 9	◇◇◇	· (주)중앙건설 사원(1년6개월, 100%)	5호봉	
2012. 8. 1	◆◆◆	· 이상수학원 관리팀장·보조교사(4년4개월, 50%)	8호봉	

그런데 위 사람은 ‘12.1월 이후 신규채용자의 경력 산정 업무를 지휘·감독하면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보조교사, 건설회사 사원 등의 경력을 호봉산정시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그 결과 민간부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을 갑경력(100% 인정)으로,

보습학원에서의 교사경력을 ‘병경력(50% 인정)’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복무규정」 제 2조, 「임직원행동강령」 제 4조, 「인사규정」 제9조를 위배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28조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책 요 구

제 목 인문정책연구사업 계약액 상향 등 연구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교통연구원  
관 계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징 계 대상자 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  
처분요구종류 문 책  
징 계 사유

위 사람은 2012.1.17부터 2013.7월 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기획·협동연구팀장으로서 협동연구사업, 인문정책연구사업 등 연구기획 및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가. 인문정책연구사업 계약액 상향 부적정

연구회는 국가차원에서 인문학의 진흥과 인문정신의 발전을 위해 「인문정책 연구사업」을 '02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12년 인문정책연구과제 공모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인문정책과제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뒤,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12.4.1 ~ '12.5.8까지 22건의 연구과제를 모집 받아, '12.5.21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18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런데 「인문정책연구사업 운영규정」 제 10조, 제 12조에 따르면 인문정책 연구심의위원회가 공모과제를 선정한 경우, 이사장은 주관연구기관장과 계약을 체결시 인문정책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아래 표에 제시된 7개 과제에 대해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당초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금액보다 상향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연구용역계약금액 변동현황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당초액 (천원)	계약액 (천원)	차액 (천원)
1	다문화 공생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	15,000	30,000	15,000
2	고부담영어시험 정책연구	△△△	18,793	30,000	11,207
3	인문학 콘텐츠 활용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도시문화사업 개발연구	▲▲▲	28,161	30,000	1,839
4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문학의 교육현황과 활성화 방안	▽▽▽	29,305	30,000	695
5	‘한류(Korean waves)’와 ‘K-pop’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 방안 연구	▼▼▼	29,918	30,000	82
6	중국 도시 개발 정책 중 근대 건축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제언	▣▣▣	29,984	30,000	16
7	한국 세계유산의 인문학 활용 융복합 문화콘텐츠 정책연구	目目目	29,990	30,000	10
차액 합계					28,849

특히 이 중 「다문화공생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은 당초 제안서에서 ‘정책의 활용성 제고방안’만을 추가로 제시하였을 뿐인데, 다른 과제들은 더 많은 수정사항이 있었음에도 금액을 상향<sup>2)</sup>시키지 않았으나, 동 과제는 인문학정책 지원이라는 사유로 15,000,000원→30,000,000원으로 상향하였고,

「고부담영어시험 정책연구」는 당초 제안서와 최종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지원을 위해서라는 사유로 18,793,000원→30,0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 나. 연구성과 홍보사업 지급절차 부적정

연구회는 연구성과 확산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홍보의 일환으로 주요 언론사(중

2)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간의 인문학적 고찰」, 「재난관리에 필요한인문학의 교육현황과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모형 연구」

앙일보, 시사투데이, TV조선 등)에 ‘12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선정’ 등 총 4건의 연구회 주요성과에 대하여 홍보위탁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사람은 세부산출내역 없이는 홍보위탁비용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언론사가 세부산출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이를 이유로 상사에게 구두보고 후 세부산출내역이 기재된 견적서도 없이 총액으로만 청구한 서류를 근거로 홍보위탁비용 3,520,000원(표3)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임전결규칙」 제3조에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를 규정에 따른 금액별 위임전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구기획·지원본부장 전결로만 결제·처리 하였다.

[표 2]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sup>3)</sup>

지급일	홍보내용	금액 (천원)	지급대상	규정상 전결권자	전 결 처리자
2012. 7. 9	2012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우수사례 선정	16,500	한국언론 문화진흥원	이사장	연구기획 · 지원 본부장
2012.10.18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선정	16,500	한국언론 문화진흥원	이사장	
2012.12.5	2012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선정	2,200	시사투데이 미디어	사무총장	
합 계		35,200			

#### 다. 연구공통관리비 지급 부적정

연구회는 ‘12년도에 협동연구사업 「공생발전 종합연구」와 연구기획사업 「국정성과와 과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과학협의회 소속학회와 25개의 사업과제에 대해 연구용역 계약(2천만원/건별)을 체결하였는데 소속학회가 집행한 연구비 사용내역에는 과제별로 인건비, 직접비(비정규직급여, 일반수용비, 회의비, 자료구입비, 공공요금비, 연구공통관리비 5%), 간접비(5%)를 계상하여 집행하였다.

3) 연구회 홍보위탁비용 지급 관련 결재선 :연구기획·지원본부장 → 미래전략연구센터 소장 → 사무총장 → 이사장

[표 3] 간접비·연구공통관리비 계상 현황

(단위:천원)

분야	계약기관	간접비 (계약기관 수량)	연구공통관리비 (사회과학협의회 수량)
공생발전 종합연구 (협동연구사업)	한국정치학회	1,000	1,000
	한국제도경제학회	1,000	1,000
	한국행정학회	1,000	1,000
	한국중소기업학회	1,000	659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무역보험학회	1,000	1,000
	한국국제경제학회	1,000	1,000
	한국정치학회	1,000	1,000
	한국사회학회	1,000	1,000
	한국언론학회	1,000	1,000
	한국행정학회	1,000	1,000
	한국산업조직학회	1,000	1,000
	한국경영학회	1,000	1,000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경영학회	485	1,000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금융연구원	762	1,000
	국정성과와 과제 (연구기획사업)	한국정책학회	1,000
한국정치학회		1,000	1,000
한국국제정치학회		1,000	1,000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경영학회		1,000	1,000
한국사회학회		960	1,000
한국경제연구학회		1,000	1,000
한국행정학회		931	1,000
<b>합계</b>		<b>24,138</b>	<b>24,659</b>

그런데 연구회가 위탁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르면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직접비를 지급하는 기준<sup>4)</sup>은 연구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 실적 및 집행근거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사람은 사회과학협의회에 연구공통관리비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

4) 학술연구용역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인건비, 직접비(경비), 간접비로 구분하고 직접비라 함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함

서는 연구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 실적 및 집행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사람은 사회과학협의회가 연구계획(안) 작성 등을 수행하고, 사업과제의 일관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해 직접비(연구공통관리비 5%)를 각 학회에서 분담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수행실적에 대한 증빙·검토 없이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12년도 연구회 실행예산서」의 전문가활용비가 200,000~300,000원(1인당/1회)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과학협의회가 수행한 실적(표5)에 대해 24,659,000원을 지급한 것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된다.

[표 4] 사업별 사회과학협의회 수행 실적

사업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요청	사회과학협의회 수행실적	지급금액
공생발전 종합연구	연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청	학회별 연구진 명단(안) 작성 제출	16,659(천원)
국정성과와 과제	연구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세부계획(안)작성 요청	세부계획(안) 작성 제출(4p)	8,000(천원)
	사업관련 소속 학회(8개)의 연구계획서 등을 취합·제출 요청	취합 자료 제출	

위 사람의 행위는 연구회의 「인문정책연구사업 운영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산정기준」 위배하는 등 전반적인 연구용역 사업의 예산집행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복무규정」 제2조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교통연구원장은 교통연구원의 「인사규정」 제38조, 「과건근무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사람을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감사역 인사발령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개선, 기관경고

내 용

연구회는 비상근 감사(監事)<sup>5)</sup> 1인을 두고 있고, 「감사직무 규정」 제2조는 감사(監査)는 업무·회계 감독 및 조사하는 것으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제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르면 감사역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감사(監事)는 同 정관 16조에 따라 연구회의 재산사항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있으며, 감사역<sup>6)</sup>의 보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연구회 이사장은 감사역으로 ‘11.1.1. ☆☆☆ 재무팀장(당시 선임관리원<sup>7)</sup>), ‘12.1.18. ▣▣▣ 전략기획TF 팀장(당시 선임관리원), ‘12.2.20 ▣▣▣ 연구기획·지원본부장 직무대행(당시 책임관리원), ‘13.4.9 ▣▣▣ 경영지원실 직원(관리원)을 인사발령 하면서, 당시 감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13.4.9 ▣▣▣을 감사역에서 면하고 평가실 평가관리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후임 감사역으로 관리원 ▣▣▣을 임명하였다.

## 가. 감사역 인사발령 절차 부적정

「감사 직무규정」 제13조는 감사인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임면과 인사이동은

5)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출연연법) 제23조 및 경사연 정관 제6조(임원의 정수)

6) 「직제시행규칙」 제2조(‘09.6.1 개정, 조직)와 同 규칙 제3조의 2(‘11.1.1 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업무 및 예산집행 등에 관한 감사업무를 분장

7) 관리직의 직급(연구회 인사규정 제4조) : 1. 수석관리원, 2. 책임관리원, 3. 선임관리원, 4. 관리원

연구회 이사장과 감사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회는 ㉠㉠㉠ 당시 감사역부터 ㉡㉡㉡ 現 감사역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감사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

또한 ㉢㉢㉢ 前 감사역에 대한 인사발령('13.4.9)과 관련하여 연구회에서는 '13.4.2.에 이사장이 감사에게 ㉣㉣㉣ 감사역을 교체하겠다고 알렸고, 인사발령 직후에는 후임 감사역의 직책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직무규정」 제13조 제2항의 취지는 감사가 감사역의 업무상 보조를 받고 있으므로 감사가 후임 감사역의 업무 및 직급의 적합성 등에 대해 이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장은 이를 존중하여 그에 합당한 인사발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사발령 前에 감사역 교체 사실을 알리고, 인사발령 後 후임 감사역의 직책 등 구체적 사항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연구회는 감사역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감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감사직무 규정」 제13조를 위반하였다.

#### 나. ㉡㉡㉡ 감사역 직급 부적정

감사역의 직급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연구회 「직제규정시행규칙」 제2조는 연구회에 사무국과 감사역을 두도록 하여 사무국과 감사역을 대등한 관계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직원근무평정규칙」에 따르면 직원 근무평정은 감사역을 본부장 등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근무평정 집계표에서는 사무총장-소장-실장-감사역-본부장-팀장-팀원 順으로 표시하고 있고, 감사역에 대한 하위자에 의한 평가에서 하위자를 '全 팀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13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회는 팀장급 이상 모든 보직자에 대해 직책수행경비를 매월 사무

총장 75만원, 소장 70만원, 실장 60만원, 본부장 50만원, 감사역 40만원, 팀장 30만원씩 지급하여 감사역에게 팀장보다 상위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現 감사역을 제외하면, 감사역에는 그간 모두 선임관리원 이상의 직급에 있는 자를 임명하였고, 특히 ☆☆☆· 前任 감사역은 감사역 보직을 면한 後 모두 책임관리원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연구회는 감사역에 책임관리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선임관리원을 임명해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연구회는 '13.4.9 現 관리원을 감사역으로 임명하면서, '06년부터 연구회 업무를 수행했고 법학전공자로서 제반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원칙을 제대로 준수할 것으로 판단했고, 감사역에 선임관리원 또는 책임관리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감사직무 규정」 제8조<sup>8)</sup>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주장한다.

하지만 「감사직무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감사인 자격요건'은 감사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現 감사역 역시 '13.4.18.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낸 '감사결과 시정요구서'에서 '관리원 직급의 직원이 본 감사를 보조하는 감사역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연구회는 감사를 보조하는 감사역을 관리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감사역 직급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관경고) 향후 감사역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관련 규정과 감사역에 대한 인사운영 전례 등을 고려하여 감사와 사전에 감사역의 직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역을 임명하도록 하기 바람

(개선)연구회 감사역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사장과 감사간의 실질적 협의가 이

---

8) 연구회 및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 前 검사역 인사발령 및 검사역에 대한 근무평정 개정 부적  
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권 고

내 용

㉣㉤㉥ 연구회 감사는 ㉠㉡㉢ 前 검사역으로부터 연구회 기관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 보고서9)’를 ’13.3.29 이사장에게 개별 통보하였다.

그런데 연구회는 ’13.4.9. 당시 검사역으로 재직 중이던 ㉠㉡㉢ 책임관리원이 ’10.1.11.~ ’12.2.19까지 전산홍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정보화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관련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 책임관리원이 국무조정실 감사(’13.4.1~4.10) 지원업무에 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역에서 면하고 평가실 평가관리팀 팀원으로 발령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12.12.24. 「직원근무평정규칙」을 개정하여 검사역에 대해 하위직에 의한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자별 평가비율을 조정하였는데, 검사역의 평가방식을 당초 소속실장 60%, 사무총장 30%, 이사장 10%의 비율로 평가하던 것

9)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이사장 직책수행경비의 부당성, 감사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협의 미이행, 근무평정규칙 개정 및 감사 담당 직원 평가방식 부당 등

에서 쏘 팀장 40%(하위직에 의한 평가), 사무총장 20%, 이사장 40%로 비율이 변경하면서, 감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

### 가. 前 검사역에 대한 불리한 인사발령

연구회 「감사직무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감사인은 법령 위반 또는 감사직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사례가 없을 경우,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연구회는 ㉠ 책임관리원이 검사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사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통상 관리원이 임명되는 평가실 평가관리팀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 책임관리원의 고용계약서에 부서 및 수행업무를 명시하지 않았고, 연구회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同 인사발령이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책임관리원은 본인보다 하위 직급인 선임관리원의 지시·감독을 받게 되었고, 검사역에게 지급되던 직책수행경비( 팀장급 이상 보직자에 전원 지급) 매월 4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사회통념상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연구회는 ㉠ 책임관리원이 전산홍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정보화사업의 부실과, 동 사업과 관련한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sup>10)</sup>이므로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 책임관리원이 국무조정실 감사('13.4.1~4.10) 지원업무에 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역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하나, 국무

10) 연구회는 그간 정보화사업 담당 업체에서 연구회 내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또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검사역을 교체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국무조정실에서 연구회를 종합감사하기 위해 보낸 사전 요구자료 목록을 '13.3.18. 접수하여 곧 종합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음

조정실에 同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했을 당시('12.12월)에도 감사역을 교체하지 않았고, 이번 감사 중 ㉠㉠㉠ 책임관리원과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 감사가 '13.4.18. 연구회 이사장에게 보낸 '감사결과 시정요구서'에서 '㉠㉠㉠은 맡은 바 직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고, 감사역의 직근 상급자라 할 수 있는 이사장과 사무총장 역시 '12년 상·하반기 근무평정에서 감사역을 他 평가대상자에 비해 특별히 낮게 평가하지 않았고, ㉠㉠㉠ 책임관리원은 감사역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위반, 직무태만 등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연구회는 「감사직무규정」 제13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였다.

#### 나. 감사역에 대한 근무평정규칙 개정 부적정

연구회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직원 근무평정규칙」에 따라 실시되고, 평가방식, 평가그룹, 평가비율 등이 평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구회 「감사직무규정」 제13조에 의하면, 감사인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평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회 이사장과 감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원 근무평정규칙」 중 감사역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때에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는 것이 감사역에 대한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에 필요하다.

그런데 연구회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규정관리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감사와의 사전 협의 사항이 아니며, 개정하기 前 전체 직원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규정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직원근무평정규칙」 개정은 「감사직무규정」에 따른 감사인에 대한 근무평가와 관련한 이사장과 감사 간의 사전 협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

고, 하위직에 의한 평가까지 추가되는 것이므로, 규정을 개정하기 前 감사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sup>11)</sup>이었으며, 「직제규정시행규칙」, 「감사직무규정」 및 「일상감사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역의 직무는 감사(監事)에 대한 지원, 감사로부터 위임받은 감사업무,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지원 등이므로 감사(監事) 및 감사역의 주요 감사 대상이라 할 이사장 및 하위직 관리자에 의한 평가비율 확대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직원근무평정규칙」 제6조 제3항에서 이사장 및 사무총장 수행직원(비서, 기사)의 경우는 직접명령자가 최종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역은 감사에게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거나, 근무평정을 보통 이상 또는 최상위 평점점을 주는 등 감사업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직원근무평정규칙」 등 감사역의 신분상 지위 등과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감사의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감사직무 규정」 제13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권고) 향후 감사역의 신분상 지위 등과 관련되는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감사의 의견을 듣는 한편, 감사역의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근무평정규칙」을 개정하고, 사전에 감사와 감사역에 대한 근무평정에 대해 협의하기 바랍니다.

11) ☐☐☐ 감사는 '13.3.29. 이사장에게 개별 통보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 보고'에서 '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감사 대상인 이사장과 연구회 내 전체 팀장들에 의해 좌우되도록 개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감사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정규직 채용직원 경력 산정 실태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기관경고, 주의

내 용

연구회 「인사규정」 제9조는 직원의 경력산정기준을 동 규정의 경력산정기준표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12조에서는 신규직원의 연봉은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경력산정에 따라 정하되, 이사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표 3> 경력산정기준표<sup>12)</sup>

구 분	경 력	비 고
갑경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공부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채용예정직종과 동일분야 근무 경력 2. 군복무기간 3. <삭 제> <2011. 2. 1. 개정>	100 %
을경력	1. “갑”의 제1호의 경력중 고용직 및 임시직(일용직 제외)으로 채용예정직종과 동일분야 근무 경력 2. “갑”의 제1호의 경력중 채용예정직종과 유사분야 경력	80 %
병경력	1. “갑” “을”의 경력 이외의 경력(자영업경력 제외)	50 %

주 : 1. 이 표에서 ‘경력’이라 함은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실무경력 또는 학력을 의미함.

\* 위 별표는 ‘11.2.1.~’12.12.23. 기간 중 적용된 것으로 2012.12.24. 개정되었음

여기에 따르면 개정 前 경력산정 기준표에서 ‘갑경력’ 또는 ‘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12) 연구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형태(정규직, 임시직)에 따른 경력인정에 차별이 없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12.7.6)함에 따라 ‘12.12.24. 동 별표를 개정하면서, 「정부투자기관,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공부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 정규직 근무경력」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경제·인문계 및 과학기술계 해당) 상근직 경력」으로 개정

공부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회는 ‘11.2.1.~ ‘12.12.23. 기간 중 채용한 신규직원에 대하여 민간기업에서의 근무경력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호봉을 산정하였다.

[표 5] 신규직원 경력 인정현황

채용일	성명	인정된 민간경력(기간, 환산율)	채용당시 호봉	비고
2011. 2.16	★★★	· (주)업코리아 기자(9개월, 100%)	8호봉	
2011. 2.16	○○○	· (주)비앤비커뮤니케이션즈 사원(6개월, 100%) · 샐리 사원(8개월, 100%)	6호봉	퇴사
2011. 2.16	●●●	· 한국해비타트서울 간사(1년6개월, 100%)	6호봉	
2011.12.29	○○○	· 한솔홈데코 사원(1년, 100%)	5호봉	
2012. 4. 9	◇◇◇	· (주)중앙건설 사원(1년6개월, 100%)	5호봉	
2012. 8. 1	◆◆◆	· 이상수학원 관리팀장·보조교사(4년4개월, 50%)	8호봉	

연구회는 민간경력은 경력 산정에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나열한 기관의 성격을 바탕으로 경력산정기준표의 취지<sup>13)</sup>를 살펴보면 ‘갑경력’ 또는 ‘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정부 또는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공부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경력산정기준표에서 ‘경력’을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실무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병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채용예정직과 관련된 실무경력’이어야 한다.

특히 정규직원의 경우 특정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전보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간부문에서의 특정경력이 담당예정업무와 일부 관련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므로, 병경력은 특정업무만을 담당하기 위해 고용하는 계약직 등의 관련 경력, 이사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사전에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 채용공고시 우대조건으로 명시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13) 연구회가 ‘12.12.24. 「인사규정」 개정시 ‘갑경력’ 인정범위를 명확히 한 점을 보더라도 경력산정기준표의 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음

하지만 연구회는 신규직원이 민간부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을 감경력(100% 인정)으로, 보습학원에서의 교사경력을 ‘병경력(50% 인정)’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관경고) 부당한 규정 적용으로 경력이 과도하게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과다 지급된 급여는 환수함이 마땅하나, 관련 규정이 이미 정비된 점, 연구회 설립 이후 관례적으로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해왔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환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적정한 경력산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민간경력에 대해서는 채용예정직종과 ‘동일분야’ 근무경력인지, 별도의 우대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온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기 바람,

(주의) 또한 신규채용자의 호봉 책정 및 감독을 소홀히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계약직 운영 규정 미비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개선, 권고

내 용

연구회 「임시직원채용규칙」 제2조는 ‘임시직원’을 연구회의 정규직원 이외의 자로서 근무기간 또는 근무일을 지정하여 채용하는 자로 정하고, 「인사규정」 제12조 및 「임시직원채용규칙」 제3조에서 임시직원의 채용은 운전업무와 비서 업무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동 규칙 제5조에서 임시직원은 인사담당 부서장 및 채용예정 부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구회는 실무적으로 임시직원을 무기계약직, 계약직, 계약직(전문위원) (이하 무기계약직, 계약직, 계약직(전문위원)을 통칭하여 ‘계약직’으로 함), 용역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면서, 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이 계약직과 관련한 채용, 인사 등 업무시 정규직원에게 준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직원채용규칙」은 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직 근로자가 없었던 연구회 설립 초기에, 운전·비서업무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채용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구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계약직 관리업무가 관련 규정 없이 실무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차 후 업무원칙을 변경하여 계약직 채용시 임시직원채용규칙을 적용하여 경쟁없이 임의로 선발하는 등 문제점이 우려된다.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선) 현재 미비한 계약직 채용, 인사, 근무평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인턴 채용·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개선, 권고

내 용

연구회는 '10년 ~ '13.3월 현재까지 인턴직원을 채용하면서, 인턴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인원을 편의적으로 구성·운영하여 왔다.

[표 6] 인턴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구성·운영 현황

구분	1차면접	2차면접	3차면접	4차면접	5차면접
2010년	3명	6명	5명	5명	2명
2011년	2명	2명	2명	2명	3명
2012년	3명	3명	4명	-	-
2013년	3명	-	-	-	-

특히 면접전형 심사표에 항목별 배점(점수)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점수(계)만 기재<sup>14)</sup>하였다.

또한 인턴직원 관리에 있어서, 연구회는 '10 ~ '13. 3월 현재까지 성희롱 예방책임자를 지정·운영하지 않고 있고, 인턴직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자체점검<sup>15)</sup>(붙임 1 참고)을 실시하지 않았다.

14) 총 7건 : 2010년도 1차 2건, 2차 5건

15) 채용, 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기획, 교육훈련 운영 등

[표 7] 인턴 채용 면접 심사표(예시)

인턴직 채용 면접전형 심사표										
2010. 2. 9.(화)										
구분	후 보 자			배 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학력	외국어 능력 (20)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20)	동요· 예외 조항 (10)	직업으로서의 경신 자세 (20)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10)	발전 가능성 (20)	계 (100)
연구인턴										
1-1	박 ( )	'83 ( )								80
1-2	박 ( )	'82 ( )								95 ✓
1-3	정 ( )	'84 ( )								92 (✓)
1-4	박 ( )	'83 ( )								95 ✓
1-5	박 ( )	'76 ( )								80
행정인턴										
2-1	정 ( )	'85 ( )								95 ✓
2-2	정 ( )	'83 ( )								94 ✓

그런데 연구회는 ‘인턴직원 운영 관리지침’에 인턴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구성·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턴직원 채용시마다 면접위원 인원을 편의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면접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연구회는 면접전형 심사표에 항목별 배점(점수)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점수(계)만 기재하는 등 면접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인턴직원 운영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회는 인턴 직원에 대한 재직자의 성희롱 예방강화를 위해 인턴이 근무하는 각 부서별로 성희롱 예방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지정·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인턴직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연구회는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어 인턴직원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선) 인턴직원 채용 후보자를 객관적·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면접위원 구성·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권고) 앞으로 면접전형 심사에 대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수 있도록 면접전형 심사표에 항목별 배점(점수)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재한 후, 종합점수(계)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고, 인턴직이 근무하는 각 부서별로 성희롱 예방책임자를 지정·운영 및 인턴직원의 운영 상황을 자체점검 하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이사장 수당 등 경비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시정(회수), 시정(세금 납부), 개선, 주의
내 용	

연구회는 「정관」 제 17조에 따르면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부지침인 「예산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05년부터 '11년까지 비상근 이사장에게 직책급, 능률성과급 및 정액판공비<sup>16)</sup>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12.3.13 감사원이 이사장의 직책급, 정액판공비는 근거없는 보수성 경비라고 지적하여 연구회는 '12.5.15 「예산집행지침」을 개정(1차)하여 비상근인 이사장에게 출근 일수에 따라 회의수당 250,000원(1일)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연구회는 '12.10.2 「예산집행지침」 사무총장 결재 없이<sup>17)</sup> 다시 개정(2차)<sup>18)</sup>하여, 이사장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월 5,000,000원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에 미신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동 지침을 '12.9.1.로 소급 적용하여 '12.10.2. 당초 지급되어야 할 9월분 회의수당 4,000,000<sup>19)</sup>원 대신 직책수행경비 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16) 정액판공비(4,500,000원/월), 직책급(2,000,000/월), 능률성과급(1,600,000원/년)

17) 사무총장은 동 지침이 근거 없다고 판단하여 실무자에게 전자결재의 결재선에서 자신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사장은 동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결재선에서 빠진 채로 최종 결재함

18) 연구회는 금번 우리실 감사 기간 중인 '13.4.17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이사장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함

19) 출근 16일(휴가기간 2012.9.1~9.14, 4일제외)×250,000원=4,000,000원

‘12.10.2~‘13.3.1까지 총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붙임 2: 상세지급 내역)

[표 8] 2012.1.1이후 이사장 경비 등 지급변경 현황

구 분	개정 전	1차 개정 (‘12.5.15)	2차개정 (‘12.10.2)
지급기간	2012.1.1 ~ 3.1(3회)	2012.5.1 ~ 9.1(5회)	2012.10.2 ~ 13.3.1(7회)
지급명목	임원수당, 직책급	출근시 회의 수당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6,500,000원/1개월	250,000원/1일	5,000,000원/1개월
비고	근로소득 인정	근로소득 인정	근로소득 미신고

### 가. 근거 없는 보수성 경비 지급

그런데 연구회 「정관」에서는 이사장에게 회의수당, 경비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20조는 기밀비(판공비), 교제비 등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사학연금 준용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의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종전에 지급되는 이사장의 회의수당이 보수 성격으로 「정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으며, ‘12.10.2. 「예산집행지침」 개정으로 이사장에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경비성격으로 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의수당은 「정관」에 명시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직책수행경비는 업무소요와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사장에게는 출장(일비), 차량지원, 업무추진비(‘12년 사용액 : 9,311,085원)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이미 지급됨을 고려하면, 이사장 직책수행경비는 월정액 고정급으로 지급되어 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12.3.15 감사원이 이미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유사한 직책수행경비로 변경한 것은 정관 17조를 위배했을 뿐 아니라, 내부지침을 이사장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연구회는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sup>20)</sup> 있으나, 국세청('13.6.13, 국세청 원천세과-347)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사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2.10.2.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를 근로소득에 미신고함에 따라 '12년 소득세 910,340원, 지방소득세 91,04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고,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 정지되어야 하는 연금도 추가로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예산집행지침 개정 절차 부적정

사무총장은 출연연법 제26조, 「연구회 정관」 제25조에 따라 연구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위이고, 「문서관리규정」 제 28조에서는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前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다만 출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검토'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기안문과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장의 수당 집행과 관련된 예산집행지침개정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검토'하고 이사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연구회는 '12.10.2 예산집행지침 개정 당시, '사무총장이 동 지침 개정은 근거가 없다고 하여 자신을 결재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여 전자문서 결재선에서 사무총장 '검토'를 생략하였는데, 이는 「문서관리규정」 상의 '검토'를 생략할 사유가 아니라 사무총장의 의견을 별지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연구회

---

20) 연구회는 타직원의 직책수행경비는 이미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있었고, 경비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의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다툼 없는 사안임에도, 연구회는 이사장의 지시로 근로소득을 미신고함

는 결재선 상의 사무총장을 생략하고 생략한 사유조차 명시하지 않아 「문서관리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사무총장의 사무국 일상 업무 처리 권한을 제한하고, 나아가 연구회의 계층적 의사 과정의 합리성을 저하시키게 되었다 .

### ③ 예산집행지침 소급 적용 부적정

연구회의 「규정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諸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할 수 없음에도, 연구회는 ‘12.10.2 개정된 同 지침을 ‘12.9.1로 소급 적용하였다.

그 결과 원래대로라면, ‘12.9.11.~9.14.(4일간)은 이사장의 휴가 기간이었으므로, 2012.10.2. 9월분 회의수당은 250,000원×20일 =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연구회는 동 지침을 9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이사장의 출근과 관계없이 9월분 직책수행경비를 ‘12.10.2. 5,000,000원을 지급하여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시정) ‘12.10.2 예산집행지침 개정 후 수령한 직책수행경비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소득세 910,340원, 지방소득세 91,040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회수) 소급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급된 1,000,000원을 회수하며,

(개선) 결재선 상의 검토자가 결재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등 문서기안 절차를 준수하고

(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시정, 개선

내 용

연구회는 보수를 연봉, 수당, 특별성과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특별성과금은 매년 4회(설, 추석, 상반기평가, 하반기 평가), 연봉월액의 300%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구회는 특별성과금은 인건비 인상률에 미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연연구기관은 정부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회는 '12.3.21 감사원으로부터 인건비 잔액을 연봉 인상분으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 보수 증액 및 인건비 집행 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아 문책등을 받아 '11년도 인건비 잔액분에 대해 출연금을 삭감하고, 연봉, 수당 등 보수 총액이 정부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회는 정부기준 인건비 인상률 3.9%를 준수토록 '12년도 연봉을 책정한 뒤 연말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자 '12.12.28. 하반기 특별성과금을 '11년도보다 4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원의 보수를 편법 증액하였다.

그 결과 금번 감사시 인건비 인상률을 재산정<sup>21)</sup>한 결과 '12년도 연봉 인상률이

6.28% 로서 정부기준 인상률 3.9%를 초과하게 되었다.

특히 연구회는 타 연구기관과 달리 연구회의 인상률 준수여부를 별도로 점검받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아, 감사원 감사로 인건비 환수가 있었던 '11년도를 제외하고, '10년 이후 계속 정부기준 인상률을 초과<sup>22)</sup>하여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시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3년도에 특별성과급 지급 시 '12년도에 초과 지급된 44,000,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시기 바라며

(개선) 향후 특별성과급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에 포함시키고, 연구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 점검 및 이사회 보고서 연구회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

21) 보직 부여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등 수당증가액(17,000,000원)을 제외하고 산정

22) 연도별 인상률(정부기준, 실제 인상률) : '09년 (1.7%, 14.8%), '10년(1.6%, 3.8%)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연구기관 발전 지원사업」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기관경고, 주의

**내 용**

연구회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평가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2012.7.12. 「연구기관 발전 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T/F 위원에게 지급될 총 금액을 <업무소요시간 × 학술용역비 단가>로 산출한 뒤 이 중 1,000,000원은 공식 회의 참석 횟수(1회 200,000원)에 따라 전문가활용비로 별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용역계약금액으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를 매회의시마다 지급하고, 과제가 완료된 뒤 ‘12.12.21 위원들 전체에게 용역금을 지급하였다.

[표 9] T/F 위원의 용역비 등 지급 계획

직 위	총 금액(A=B+C) (참여시간× 학술 단가/h)	전문가활용비(B)	용역계약(C)
팀 장(1명)	4,307,570원 (130시간 ×33,135원)	1,000,000원 (5회× 200,000원)	3,307,570원
간 사(1명)	2,810,540원 (115시간 ×33,135원)	1,000,000원 (5회× 200,000원)	2,810,540원
위 원(11명)	2,313,510원 (100시간 ×33,135원)	1,000,000원 (5회× 200,000원)	2,313,510원

그런데 연구회는 ‘12.12.27. 13명의 위원들이 공식일정 외 수시로 연구기관을 개

별 방문하여 회의를 했다는 사유로 전문가활용비 7,800,000원 추가 지급하였다.

연구회는 단기간에 양질의 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요청으로 회의가 수시로 개최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많은 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된 전문가활용비는 보고서의 충실도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연구회의 「연구기관 발전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위원들에게 지급될 총 금액을 회의 시간, 보고서 작성시간, 연구기관 의견 제시 검토 시간 등 용역 결과물 제출에 필요한 모든 업무시간을 포함하여 참가시간을 산출하였으며, 위원들의 공식 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1,000,000원은 당초 용역금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활용비’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원 개개인이 기관을 방문한 시간은 이미 용역 참가시간에 포함되어, 지급한 총 금액<sup>23)</sup>에 포함되어 있었고, 기관 방문은 최종 결과물 제출을 위해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계약 이행 사항으로 보이는 바, ‘12.12.27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회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는 회의 외부 참석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데 연구회와 계약을 맺어 최종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은 외부참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전문가활용비 지급은 부당하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관경고) 용역 수행 과정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근거없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의)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

23) 위원들은 이미 '12.9.20.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고, '12.12.21 계약금 잔금까지 지급 받음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연구 성과 홍보 경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기관경고, 주의

내 용

연구회는 연구성과 확산사업에 대한 연구성과 홍보의 일환으로 주요 언론사(중앙일보, 시사투데이, TV조선 등)에 ‘12년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선정’ 등 총 4건의 연구회 주요성과에 대하여 홍보위탁을 추진하고, 홍보위탁 추진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지정한 한국언론문화진흥원, 시사투데이미디어 등 총 4건에 대해 홍보위탁비용 55,2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홍보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홍보위탁비용 지급 요청서에 세부산출내역이 기재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연구회에서는 세부산출내역이 기재된 견적서도 없이 총액으로만 청구한 서류로 결재를 하여 홍보위탁비용을 지급하였다.

특히 당시 담당 팀장들(□□□, ◆◆◆)은 언론사의 홍보위탁비용 지급요청서에 총액으로만 청구한 것을 확인하고, 세부산출내역 없이는 홍보위탁비용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언론사 담당자에게 세부산출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담당자들은 이사장까지 내부 보고하였으나 결국 추진하게 되었다

[표 10] 세부산출 내역 없는 언론사 홍보 위탁 사항

홍보내용	지급대상	언론사	비고
2012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우수사례 선정	한국언론문화진흥원	중앙일보	언론사 담당자에게 홍보위탁비용 세부산출내역 요청(전화 통화), 불가 받음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선정	한국언론문화진흥원	중앙일보	
2012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선정	시사투데이 미디어	시사투데이	
20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한국언론문화진흥원	TV조선	

또한 연구회는 직무수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위임전결규칙 제3조에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를 규정<sup>24)</sup> 하고 있는데 연구회는 언론사의 홍보위탁비용 지급시 미래전략연구소 운영에 대한 지급 금액별 위임전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구기획·지원본부장 전결로만 결재를 하여 홍보위탁비용을 지급하였다.

[표 11]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

지급일	홍보내용	금액(천원)	지급대상	규정상 전결권자	전결처리자
2012. 7. 9	2012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우수 사례 선정	16,500	한국언론문화진흥원	이사장	연구기획·지원본부장
2012.10.18	2012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선정	16,500	한국언론문화진흥원	이사장	
2012.12.5	2012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선정	2,200	시사투데이 미디어	사무총장	
2013.1.28	20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20,000	한국언론문화진흥원	이사장	
합 계		55,200			

※ 연구회 홍보위탁비용 지급 관련 결재선 :  
연구기획·지원본부장 → 미래전략연구소장 → 사무총장 → 이사장

연구회는 위임전결 규정 위반에 대하여 “‘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건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전결권을 위임받아 처리(◆◆◆)한 것이고, 이외의 3건은 결재권자에게 관련 문서 및 내용을 사전 보고 후 진행(□□□

24) 연구회의 미래전략연구소 운영에 대한 금액별 지출 결재권자 : 100만원 이하는 본부장 전결, 200만원 이하는 미래전략연구소장 전결, 300만원 이하는 사무총장 전결, 300만원 초과는 이사장 결재

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언론사의 홍보위탁비용 지급시 연구회의 미래전략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지급 금액별 위임전결 규정을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관경고) 언론사의 홍보위탁비용 지급시 지급 금액별 위임전결 규정을 엄수하기  
바라며,

(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위탁연구사업 정산 서류 관리 미흡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개선

내 용

연구회는 협동연구사업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사업 완료 후 근거자료<sup>25)</sup>를 사업수행기관이 보관하고 연구회가 요청할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비 집행에 대한 원본 영수증 및 지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문정책 연구사업 추진 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인문정책연구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집행 관련 원본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연구회가 요청할 경우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기획연구사업 외부용역계약을 할 때에도 외부용역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정산서를 총괄 정산내역서만 제출받고 지출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사업 수행기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회가 인문정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문화 공생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계약기간 : '12.6.20~12.17)」 과제의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보고서 발간 승인 이후

---

25) 연구회는 근거자료를 예산 집행과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로 해석하고 있으나, 사업 수행기관에 보관하도록 한 근거 자료는 사업 완료 후 반납하기 어려운 연구 장비, 논문, 도서 등으로 볼 수 있음

(’12.12.17)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연구비에 포함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표 12]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

사용일시	금액(원)	사용내역
’12.12.21	19,000	도서(동양적 사유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12.12.22	88,100	도서(대학중용, 장자)
’12.12.22	96,900	도서(미드 스크린영어회화, 중국어 첫걸음, 미국식 영작문, 말썬힐링 100일, 시경)
’12.12.21	21,000	단어장, 아로마 소품
’12.12.22	38,000	물품(계산기, 다이어리)
’12.12.22	39,900	물품(라벨터치테잎)
’12.12.21	183,400	소모성 사무용품(복사용지, 노트, 볼펜 등)

연구회는 외부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수행기관이 집행한 연구 사업비의 예산집행지침 준수 여부, 비목별 계상금액의 타당성, 연구비 집행시기의 적절성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한 검토가 부족하고 연구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등 부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선) 향후 연구사업 외부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연구 사업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집행 내역에 대하여 연구회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협동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평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개선

내 용

연구회는 2012년 협동연구사업 「공생발전 종합연구」를 기획하면서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의수행방식등)에 따라 연구회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연구회가 선정한 종합과제에 대하여 일부 과제(31개)는 소속 산하연구기관을 과제 수행자로 지정하고, 그 외 사업과제(17개)는 사회과학협의회 추천을 통해 사회과학협의회 소속 학회를 과제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11년 협동연구사업의 「중국관련 종합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기초연구」는 학계(대학교), 「중국 기초심층연구」는 연구회 내 중국연구자문위원회(TF), 「중국 정책연구」는 소관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외부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표 13] 평가위원 현황

연구과제명(2011)	평가위원	
	중간평가자	최종보고서 평가자
중국 기초연구	연구회 소속 직원 4명 - 세계지역본부장(●●●) - 국책과제협력과장(◇◇◇) - 미래전략팀장(□□□) - 연구회 부연구위원(⓪⓪⓪)	연구회 소속 직원 4명 - 세계지역본부장(●●●) - 국책과제협력과장(◇◇◇) - 미래전략팀장(□□□) - 연구회 부연구위원(⓪⓪⓪)
중국 정책연구	과제 수행기관에서 자체평가	
중국 기초심층연구	과제를 수행한 총괄책임자들 간의 상호 교차평가를 실시	

과제수행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인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협동연구사업 보고서 평가 결과<sup>26)</sup>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성과인센티브 도입 이후 모든 과제수행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可로 판정되어 성과인센티브를 100% 지급하였다.

#### 가. 협동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 부적정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협동연구사업은 연구기관, 학회 외 대학, 산업계 그밖에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구회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회는 ‘12년도 추진과제(48개)에 대해 모두 연구회가 지정한 기관들과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기관, 학회 외 대학, 산업계,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다.

#### 나. 협동연구사업 연구결과물에 대한 평가 부적정

연구용역의 최종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 출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성이 있고, 평가 결과에 따

26) 평가결과가 可인 경우 사업예산 실행서에 계상된 성과인센티브(총연구비의 10%이내)를 100% 지급토록 하고, 평가가 否인 경우는 성과인센티브를 미지급하지만 재평가를 통해 可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80%를 지급하도록 함

라 용역금 잔액과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결정됨으로 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회는 평가단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내부직원, 수행기관 자체 평가, 과제수행 연구자들간 상호교차 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합리성을 저해하였다.

특히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은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정하여 둔 연구회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sup>27)</sup>」 등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선) 향후 협동연구사업에 연구기관, 학회 외 대학, 산업계, 국내외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평가위원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

27) 동 규정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업계·학회·연구기관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상호간 평가자,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등은 제외하는 제척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협동연구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기관경고

내 용

연구회는 협동연구사업 공생발전 종합연구를 추진하면서 48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 수행기관(산하연구기관, 학회)을 선정하여 용역계약('12.1.11~'13.10)을 체결하면서, 모든 과제에 대해 일괄적으로 2천만원에 계약하였는데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비 집행률이 80%미만인 계약이 48개 과제중 16개에 달한다.

[표 15] 협동연구사업비 집행률 및 집행 잔액

(사업비 집행률 80%미만 기관)

연번	과제명	수행기관	사업집행률	잔액(천원)
1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공생발전의 기본전략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3%	15,444
2	일자리 나누기(워크쉐어링) 모형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45%	11,015
3	소득·노동시장정책의 연계를 통한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62%	7,552
4	교육·고용 연계를 위한 교육시스템 선진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71%	5,890
5	교통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61%	7,876
6	해양수산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48%	10,341
7	대외개방형 경제하에서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0%	6,020
8	에너지부문 공생발전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9%	14,251
9	환경부문의 공생발전 실행방안 연구	환경정책연구원	61%	7,847
10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연구	조세연구원	80%	4,049
11	여성고용활성화를 통한 여성빈곤의 완화와 공생발전 모색	여성정책연구원	78%	4,373
12	이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원	66%	6,757
13	비정규직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41%	11,753
14	공생발전의 체계적 추진에 관한 입법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69%	6,163
15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66%	6,723
16	상생의 고용관계 구축을 위한 사내하도급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74%	5,103
총 잔액				131,157

### 가. 협동연구사업 집행잔액 과다 부적정

연구회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제의 경중, 수행기관의 규모와 인력 등을 고

려하고,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실행계획서가 관련 예산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비목별 계상금액의 적절한지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의 조정·검토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회의 연구사업비 편성·집행 내역에 대한 사전 조율·검토 절차가 미흡하여 일부 기관에서는 75%의 집행 잔액을 환입하는 등 사업비 잔액이 과다하였다.

연구회는 연구비를 환입한 기관이 모두 소관 연구기관이고, 「협동연구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은 과제 연구비 총액의 10%만을 인건비로 계상해야 하는 규정의 문제라고 하나, 이는 예산실행계획서 작성 시 규정에 따른 예측 가능한 사유로 이를 감안하여 인건비 외 직접비의 항목들이 적절하게 계상되었는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고, 연구사업비의 직접비 항목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은 당초 예산항목에 불필요한 비목이 계상되었거나,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협동연구사업 보고서 평가 및 제출 부적정

또한 위 사업의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연구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구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고, 연구회는 사업 완료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연구회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서면 평가로 대체하였는데 이중 1개 과제<sup>28)</sup>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12.4.2)가 연구용역 최종산출물(인쇄

28)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평가연구」, 보고서 제출(12.3.24) 뒤, 평가 12.4.2 완료

책자본) 제출('12.3.24)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지적사항은 실질적으로 결과보고서에 미반영 되게 되었다. 또한 2개 과제<sup>29)</sup>는 계약서 상 보고서 제출기한('12.3.24)을 넘겨 각각 '12.4.30, '12.5.31 제출하였다. 이는 평가위원을 개인사정으로 평가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제출기한을 1~2개월 지연하였음에도 연구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연구사업 관리가 부실하였다.

#### 다. 협동연구사업 최종보고서 검수 부적정

그리고 연구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과제수행기관은 최종산출물(발간물)에 영문 요약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구회는 「회계규정시행규칙」에 따라 용역제공에 대한 검수를 시행하고, 검수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이행내용이 계약위반이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과제수행기관이 제출한 48개의 최종산출물 중 21개 책자에 영문 요약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정절차 없이 검수를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한 바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관경고)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조율·검토 과정을 철저히 수행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규정에 따른 연구 절차를 준수하고 연구용역 성과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29)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12.4.30 제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연구」 12.5.31 제출.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연구공통관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개선

내 용

연구회는 '12년도에 협동연구사업 「공생발전 종합연구」와 연구기획사업 「국정 성과와 과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과학협의회 소속학회와 25개의 사업과제에 대해 연구용역 계약(2천만원/건별)을 체결하면서 소속학회가 집행한 연구비 사용내 역에는 과제별로 인건비, 직접비(비정규직급여, 일반수용비, 회의비, 자료구입비, 공 공요금비, 연구공통관리비), 간접비(5%)를 계상하여 집행하였다

[표 16] 간접비·연구공통관리비 계상 현황

(단위:천원)

분야	계약기관	간접비 (계약기관 수령)	연구공통관리비 (사회과학협의회 수령)
공생발전 종합연구 (협동연구사업)	한국정치학회	1,000	1,000
	한국제도경제학회	1,000	1,000
	한국행정학회	1,000	1,000
	한국중소기업학회	1,000	659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무역보험학회	1,000	1,000
	한국국제경제학회	1,000	1,000
	한국정치학회	1,000	1,000
	한국사회학회	1,000	1,000
	한국언론학회	1,000	1,000
	한국행정학회	1,000	1,000
	한국산업조직학회	1,000	1,000
	한국경영학회	1,000	1,000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경영학회	485	1,000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금융연구원	762	1,000

국정성과와 과제 (연구기획사업)	한국정책학회	1,000	1,000
	한국정치학회	1,000	1,000
	한국국제정치학회	1,000	1,000
	한국경제학회	1,000	1,000
	한국경영학회	1,000	1,000
	한국사회학회	960	1,000
	한국경제연구학회	1,000	1,000
	한국행정학회	931	1,000
<b>합계</b>	<b>24,138</b>	<b>24,659</b>	

연구회가 위탁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협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기본연구사업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르면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직접비를 지급하는 기준<sup>30)</sup>은 연구에 소요된 경비를 정산하여 실적 및 집행근거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구회는 사회과학협의회 소속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가 아닌 사회과학협의회에 일괄적으로 5%의 연구공통관리비를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직접비는 사회과학협의회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발생한 소요 경비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에도, 사회과학협의회에 수행실적에 대한 증빙·검토 없이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12년도 연구회 실행예산서」에 따르면 과제 발굴·수행 등과 관련한 전문가활용비가 200,000~300,000원(1인당/1회)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과학협의회가 수행한 실적에 비해 직접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사회과학협의회에 지급된 연구공통관리비는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다.

30) 학술연구용역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인건비, 직접비(경비), 간접비로 구분하고 직접비라 함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함

[표 17] 사업별 사회과학협의회 수행 실적

사업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요청	사회과학협의회 수행실적	지급금액
공생발전 종합연구	연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청	학회별 연구진 명단(안) 작성 제출	16,659(천원)
국정성과와 과제	연구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세부계획(안)작성 요청	세부계획(안) 작성 제출(4p)	8,000(천원)
	사업관련 소속 학회(8개)의 연구계획서 등을 취합·제출 요청	취합 자료 제출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선) 위탁 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연구비 항목별 계상 근거기준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인문정책연구사업 계약액 상향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개선

내 용

연구회는 국가차원에서 인문학의 진흥과 인문정신의 발전을 위해 「인문정책연구사업」을 '02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12년 인문정책연구과제 공모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인문정책과제는 공모를 통해 모집한 뒤,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12.4.1 ~ '12.5.8까지 22건의 연구과제를 모집받아, '12.5.21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18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회는 확정된 18개 과제를 일괄적으로 각 30,000,000원에 계약하였다.

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 운영규정」 제 10조, 제 12조에 따르면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공모과제를 확정할 경우, 이사장은 주관연구기관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12.5.21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22개 과제 중 연구능력, 연구과제의 적정성,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18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므로, 연구회는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구회는 아래 표에 제시된 7개 과제에 대해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요청이나 연구자의 요청, 연구회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당초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

회가 선정한 금액보다 상향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총 28,849,000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다.

[표 14] 연구용역계약금액 변동현황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당초액 (천원)	계약액 (천원)	차액 (천원)
1	다문화 공생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	15,000	30,000	15,000
2	고부담영어시험 정책연구	△△△	18,793	30,000	11,207
3	인문학 콘텐츠 활용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도시문화사업 개발연구	▲▲▲	28,161	30,000	1,839
4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문학의 교육현황과 활성화 방안	▽▽▽	29,305	30,000	695
5	‘한류(Korean waves)’와 ‘K-pop’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 방안 연구	▼▼▼	29,918	30,000	82
6	중국 도시 개발 정책 중 근대 건축유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한국의 정책에 대한 인문학적 제언	▣▣▣	29,984	30,000	16
7	한국 세계유산의 인문학 활용 융복합 문화콘텐츠 정책연구	目目目	29,990	30,000	10
차액 합계					28,849

계약금액 부적정 조정 사례를 보면 다문화공생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은 당초 제안서에서 ‘정책의 활용성 제고방안’만을 추가로 제시하였을 뿐인데, 정부학술기준단가가 아닌 연세대 관리지침<sup>31)</sup>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15,000,000원→30,00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회는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을 추가로 연구 개발 하도록 연구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소요예산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 인문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연구과제 전반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보완이 필요했던 다른 과제들의 경우에는 금액을 상향<sup>32)</sup>시키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살펴봐도 정책활용성 제고 방안으로 ‘좌담회’ 개최를 하고 관련 예산을 2,5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을 뿐으로 15,000,000원의 계약금을 상향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또한 「고부담영어시험 정책연구」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보조원

31) 다른 연세대의 제안서와 달리 동건에 대해서만 학술연구용역기준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연세대 관리지침을 적용

32)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간의 인문학적 고찰」, 「재난관리에 필요한인문학의 교육현황과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의사소통모형 연구」

의 인건비를 상향하여 계약금액을 18,793,000원→30,000,000원으로 조정하였는데 당초 제안서와 최종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계약금을 상향할 근거가 없다.

그 결과 연구회는 인문정책연구사업이 인문학계의 연구지원의 성격도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비 증액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인문정책연구사업운영규정」 제12조(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문정책연구심의회 의 심사결과<sup>33)</sup>에 따라 이사장이 공모과제를 선정하고도 선정 당시 심의·확정된 연구비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계약금액을 상향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28,849천원)이 부당하게 집행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선) 인문정책연구사업 규정에 연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

33) (심사기준) 1.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능력, 2. 제안요청서와 연구계획서의 부합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적절성, 4.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5. 관련분야와의 학제간 협동연구 정도, 6. 그 밖에 연구에 수반되는 특기 사항

## 처 분 요 구 서

제 목 평가사업평가위원 산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처분요구종류 기관경고

내 용

연구회는 출연연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기관장 리더십, 주요 과제 등을 평가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연구기관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 < 평가단의 업무 >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기관장 리더십, 연구윤리 준수여부, 주요현안과제 등의 평가
2. 평가관련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 등에 관한 자문
3.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연구회는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위원 선정 시 기준과 결격사유<sup>34)</sup>를 명시하였으므로, 연구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선정해야 한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김정훈 교수를 '11년도 연구기관 평가단 자원인프라 분과 간사로 선정하였다.

※ ○○○교수 국토연구원 재직기간(1992.3.23~2010.2.28)

34)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평가 대상년도의 연구기관 기본수탁 과제책임자 및 참여자
2. 최근 3년간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조치할 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기관경고)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평가단 구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인턴직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자체 점검표

구분	점검항목	자체 점검지표 (예시)	확인결과 (O, Δ, X)
채용	채용시스템의 합리성	관련 부서의 인력 수요 조사에 따른 인채용 분야 결정	
		채용 분야의 세분화	
		적당한 공고 및 행정인턴부 내알터 등 활용 여부	
배치	개인욕구의 고려	개인의 욕구 및 역량과 직무경험을 고려한 배치	
		근무부서 이동의 유연성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인턴의 만족도	
성과평가	측정방법	현업평가 시스템의 합리성	
		과제평가 여부	
	피드백	평가정보 확인 및 공개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제도	
교육훈련 기획	조직의 가치와 조직분위기	행정인턴 교육훈련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인턴의 자기주도 학습 촉진을 위한 지원 정도	
	교육 계획 수립	기관별 행정인턴 교육계획 및 개인별 계획 수립	
		인턴 수요에 따른 교육 체계수립 및 과정개발	
교육훈련 운영	정책방향 교육	정부시책에 대한 교육 여부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등 개최 정도	
		재직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교육훈련 선택권	인턴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성	
	교육훈련 결과	행정인턴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참여율	
		행정인턴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참여시간	

## 이사장 수당 등 지급 내역

지급일	지급항목	지급액	비고
2012-01-02	직책급,임원수당	6,500,000	근로소득 신고
2012-02-01	직책급,임원수당	6,500,000	
2012-03-02	직책급,임원수당	6,500,000	
2012-04-02		-	
2012-05-02	회의수당	5,000,000	
2012-06-01	회의수당	5,250,000	
2012-07-02	회의수당	5,000,000	
2012-08-01	회의수당	5,000,000	
2012-09-03	회의수당	5,250,000	
2012-10-02	직책수행경비	5,000,000	
2012-10-04	직책수행경비	5,000,000	
2012-11-01	직책수행경비	5,000,000	
2012-12-03	직책수행경비	5,000,000	
2013-01-02	직책수행경비	5,000,000	
2013-02-01	직책수행경비	5,000,000	
2013-03-04	직책수행경비	5,000,000	
총액		80,000,000	

\* '12.1월 지급된 능률성과급(1,600,000원)은 제외하고 표시